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대상) ①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복무평정 기간 중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평정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평정 등급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술식 평가 대상으로만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평정자)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급자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하게 할 수 있다.

1. 「검찰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상급자

2. 법무부에 소속되어 검사를 감독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 소속 검사로서 해당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하는 상급자

3. 직무대리 등의 사유로 소속되어 있는 검찰청 외에서 근무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직무대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해당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하는 상급자. 다만, 직무대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서 평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평정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평정 항목 또는 단계별로 각 복무평정자가 분담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支廳) 소속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도

2. 치밀성·성실성

3. 추진력·적극성

4. 판단력·기획력

5. 보고·의사소통 능력

6. 인화협조·조직관리 능력 및 친절성

7. 자기통제·자기개발 능력

제5조(평정방법) ① 복무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업무성과와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평정 대상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실질적·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은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을 종합하여 평정한다.

③ 복무평정을 위하여 평정 대상 검사는 자신의 업무실적을 작성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평정시기) 복무평정은 매년 2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

제6조의2(평정회의 개최) 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정을 위해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를 둔 검찰청은 복무평정 전 차장검사 주재로 소속 부장검사들이 참여하는 평정회의를 개최하여 각 평정 대상 검사들의 제4조 각 호의 항목과 관련한 내용에 관하여 논의한다.

② 평정자는 제1항의 회의 결과를 존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③ 평정회의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면평가) 법무부장관은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해에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쳤거나 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검사, 평가 대상 검사와 동일 청 또는 동일 부서에서 함께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검사 등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평정자료의 보관) 법무부장관은 복무평정 결과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평정결과의 비공개 등) ① 복무평정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은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범위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고,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른 검사자격심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은 검사에게 그 결과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② 복무평정 결과는 인사업무를 위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평정결과의 요지 고지)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고지 주기 동안의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한 검사의 고지 주기 동안의 누적 평정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적절한 방법으로 그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한다.

③ 본 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3(평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평정 결과의 요지를 고지 받은 검사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평정결과의 요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기재와 관련 있는 평정을 한 평정자에게는 그 의견서의 내용을 통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서를 평정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제9조의4(비공개 의무)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 받은 검사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세칙) 복무평정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